



통권 489호

2024

05

가정상담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1227-7568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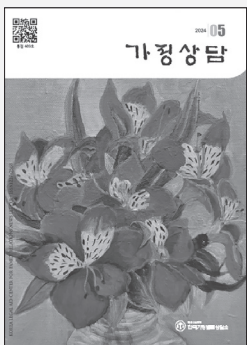
본소의 2024년도 제1차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위원장 김상용)가 지난 4월 26일 본소 8층 대강의실에서 직원재교육을 겸해 이루어졌다. (관련 기사 34면)



지난 4월 5일 본소 강당에서 2024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국업무협력기관 워크숍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관련 기사 34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청 : 청렴한 마음으로 깨끗한 세상을
럼 : (염)원 합니다.



- 4 • 이달의 메시지
- 6 • 특집 | 가정의 달 - 양육비이행확보방안의 강화 필요에 대해
- 21 • 특별기획 | 동지교실 Ⅷ 나와 가족의 행복한 관계를 위한 정신건강 챙기기 ④
- 24 • 기획연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㉔
- 25 • 가정폭력상담실
- 29 • 어떻게 할까요
- 31 • 좋은 책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 32 • 현장실습 소감문
- 34 • 상담소 소식과 상담 통계
- 37 • 소송구조



가정의 달을 맞으며 -

가정이 평화롭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정치가 되기를

한 20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그때에도 강원도 산골짜기 마을에는 전쟁의 소식도 모른 채 지낸 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모티브로 그러한 마을에 모이게 된 남과 북 그리고 불시착한 연합군 비행기 조종사와 마을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있었습니다. 평화롭고 정이 넘치는 마을, 전쟁의 민낯을 보고 생각이 많아진 북측의 장교가 마을의 촌장에게 어떻게 이리 마을을 평화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촌장은 별일 아니라는 듯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머를 마이 뻬여야지.” 평화와 인정의 근원, 삶의 근본이 의식주에 있음을 촌로는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서민의 밥상 물가란 늘 오르막이 있고, 때로 비가 많이 오고 가뭄이 심해서 이런 저런 부침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만 최근의 물가는 심상치 않게 생각됩니다. 명절 전후로 과일값 이야기, 어느 때의 채소 가격 폭락 이야기는 반복되는 일상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요즘은 좀 다르게 다가옵니다. 기후 위기, 정책의 부재 등이 맞물려 서민들의 삶이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듯 위기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우리 사회의 가정 문제와 그 실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상담소에서는 사회 전반의 경제 위기가 어떻게 가정을 흔드는지 그리고 이런 경제 위기가 느껴지면 곧 그 파도가 어떤 방식으로 가정에 들이닥치게 될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기에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위기와 고통 앞에서도 가족구성원 전체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힘을 합쳐 힘겨운 파도를 헤쳐 나가 마침내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과 가정생활을 그럴 때 지향하는 바도 그러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나 가정 모두 어떤 상황에서는 초인적인 역량을 발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아주 작은 외부의 타격에 힘 없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나쁘고 어떤 가정이 특별히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고 마는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쉽게 사람이 무너지지 않고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가정의 해체로 가족구성원이 흩어지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모든 가정을 부축하고 도와주는 것이 사회와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존재 이유, 정치가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해마다 상담소에서는 지난 일 년을 돌아보는 지표로 상담통계를 내고 통계의 내용과 소송구조 진행을 분석합니다. 이러한 상담통계에는 우리 가정이 지닌 문제 상황의 구체적 내용과 사적 변화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지난해 상담소를 찾은 이들의 이혼 사유를 보면 여성의 이혼 상담 사유 첫 번째는 폭력으로 대표되는 남편의 부당한 대우 그리고 두 번째가 장기별거, 성격 차이, 경제갈등 등으로 대표되는 기타 사유입니다. 남성이 이야기하는 사유는 첫 번째가 장기별거, 성격 차이, 경제갈등 등으로 이어지는 기타 사유입니다. 경제갈등이 이혼 사유의 주요한 범주에 있음은 어떠한 경우에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상담소에서 진행한 소송구조 가운데 132건의 신용회복 관련 소송구조 분

석을 보면 채무를 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생활비 부족으로 60.3%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참으로 안타까웁습니다. 서양의 속담에 ‘가난이 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은 창문 밖으로 달아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의 나약함을 말하기 전에 절대적인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정부는 우리에게 안전한 사회, 든든한 국가가 있음을 믿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5월 말이면 제22대 국회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국회 전체는 물론 특히 이번에 국회 내 제1당으로써 지위를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은 최근의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하여 국민의 삶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보여주기 위한 정책이나 입법 활동이 아니라 농촌과 도시를 아우르고 대도시와 지방의 삶을 두루 살피 소외된 곳 없이 국민의 삶이 조금은 나아졌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그 책임과 의무, 역할에 철저하게 임해 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우리 사회의 가정과 가족구성원이 처해 있는 현실을 그 눈높이에서 보아 줄 것을 당부하고 요청합니다. 개인과 가정의 삶이 사회 전체 나아가 지구상의 과제 그것과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은 물론 정부가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저출생과 기후위기 그리고 세계 분쟁의 여파가 곧 우리 가정으로 밀려오는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바라보고 가정의 문제와 세계적 과제를 아우르는 올바른 해결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정부와 다수당에 거는 국민의 기대입니다.

우리 사회가 시장에서 사과 한 개, 양배추 한 통을 마음 편히 집어들 수 없는 오늘의 현실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5월에 맞은 가정의 달입니다. 모든 가정마다 평화와 안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가사소송법」상 양육비 등 이행확보방안의 강화 필요성*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한부모가정이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자녀 양육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2001년 ‘양육비 이행확보에 대한 실태 및 의식’ 조사를 실시한 바 있었다. 해당 조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양육비 관련 실태 및 의식조사였으며 본소는 이를 바탕으로 2001년 5월 가정의 달 기념 심포지엄으로 ‘양육비 제대로 받고 있는가’를 시작으로 양육비 관련 세미나와 강연회 등을 꾸준히 개최하면서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의견서, 법안 등을 정부와 국회, 각 정당의 위원회 등에 지속적으로 제출하였다. 양육비 제도의 법적 개선을 위한 본소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은 양육비이행확보에 관한 법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켰고, 2009년 양육비의 지급과 관련된 민법과 가사소송법의 개정을 이끌어 냈다. 본소는 현재도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문제에 대하여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양육비 소송구조 및 조사연구와 함께 양육비 관련 법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이번 호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사소송법상 양육비 이행확보방안의 강화 필요성에 관해 논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I. 서론

II. 사전처분의 집행력 인정 필요성

1. 사전처분 의의

2. 사전처분 개정안

가. 연혁

나. 현행 사전처분제도의 한계

다. 개정안 주요내용

(1) 집행력을 통한 사전처분의 실효성 확보

(개정안 제140조 제5항)

(2) 사전처분 취소·변경 제도의 신설

(개정안 제140조 제2항)

(3) 즉시항고 규정의 정비

(개정안 제140조 제8항 및 제9항)

* 이 원고는 2024년 1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추최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본관 406호)에서 개최되었던 ‘가사소송법 개정 관련 공청회’에서 진술한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위 공청회는 법사위원장 인사에 이어 “소송대리인으로서의 가사소송법 개정 필요성” (이경아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가사소송법 전부개정 필요성” (이광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가사소송법상 양육비 등 이행확보방안의 강화 필요성”(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 1부장) 등 진술인들의 발표와 질의 및 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필자는 2013년 대법원 주관 가사소송법개정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III. 감치명령 요건 완화의 필요성

1. 양육비 등 이행확보에 있어 감치명령의 한계
2. 제재수단으로서의 감치명령 개정의 필요성
3. 개정안 주요 내용
 - 가. 감치명령 요건 완화
(개정안 제151조 제1항 제2호)
 - 나. 미성년자녀 인도청구의 집행규정 신설
(개정안 제145조)

IV. 결론

I. 서론

가사사건의 절차를 규율하는 가사소송법은 1990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동안 가사소송법 조문의 일부 개정은 있었으나 가족의 변화와 사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정체상태에 있어 전면 개정을 통해 재정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었다.

이에 대법원은 2013년 가사소송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였고, 2015년 3월 법무부에 건의안으로 제출하였다.

그에 따라 법무부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위원회를 통해 대법원의 건의안을 검토 및 수정하여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였고, 이는 2017년 3월 입법예고되어 20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21대 국회에서도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정부안으로 제출되었으나 이번 5월 29일 국회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어서 또 다시 폐기 수순을 밟게 되었다.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가사재판절차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가사사건과 관련한 국민의 인식과 사회변화를 고려하는 한편 가사재판절차에서 국민의 권리와 편의 보장, 그리고 가정법원의 확대 설치에 따른 후견 복지 기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전면 재구성된 것이다.

동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가사소송사건을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과 재산관계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사비송사건을 상대방이 없는 가

사비송사건과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으로 구분하여 사건을 알기 쉽게 재분류함으로써 가사재판절차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성을 증대하였다.

- 2) 미성년자가 사건본인이거나 당사자인 재판절차에서 미성년자의 의사를 파악하기 위한 진술청취, 미성년자를 위한 절차보조인제도 등을 신설하고 양육비 지급과 유아인도 등에 있어 이행확보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전처분에 집행력부여와 감치명령 요건 완화 등의 개정으로 미성년자의 복리 보호와 가사재판절차에서의 미성년자의 권리를 강화하였다.
- 3)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한 가족관계관련 가사소송사건이나 신분적 권리와 관련한 가사비송사건에서 의사능력이 있으면 소송행위 또는 비송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능력에 흠결이 있는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였다.

또한 가사재판절차에 필요한 규정들을 대폭 수정, 정비 내지 체계화하여 절차법으로서의 완결성을 갖추도록 하였다.

그러나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총 157개 조문)은 개정안 마련 후 10여 년간 표류하고 있는 상태이다. 가사소송 절차에서의 국민의 권익 보호와 선진적인 가사재판의 확립을 위해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22대 국회에서는 동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가사소송법개정안 중 ‘양육비 등 이행확보방안의 강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부모가족의 미성년자녀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특히 비양육친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의식주에 관한 기본적인 양육환경이 위태로워지고 미성년자녀의 건강한 성장이 저해되어 결국 생존권조차 위협당할 수 있다. 그리고 미성년자녀가 받아야 할 교육 여건 역시 취약하게 되어 결국 미성년자녀의 복리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양육비는 미성년자녀의 생존과 성장에 필수적인 자원이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는 양육비가 잘 지급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운영에 힘써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비 이행확보제도가 종전보

다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시행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¹⁾에 따르면, 조사대상 전체 한부모 중에서 72.1%가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최근에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8.6%로,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거나, 과거에는 받았으나 최근에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80.7%에 달하였다. 이는 한부모가정의 미성년 자녀 10명 중 2명만이 양육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진행한 양육비이행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양육비지급이 이행된 8,080건 중 최소 3회 이상 이행한 경우는 4,084건에 불과하여 양육비이행의 지속률은 50.5%에 그쳤다.²⁾ 양육비는 협의나 법원의 결정 혹은 판결을 통해 통상 미성년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소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정해지는 양육비 액수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을 고려한다고 하지만 1인당 월 30~50만 원이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월 70~100만 원의 양육비가 인정되기도 한다. 그런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2023년 양육비 소송구조사례를 보면, 미지급양육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가 61% 이상으로, 3천만 원 이상 내지 1억 원을 넘는 경우도 25%나 되었다.³⁾ 양육비는 미성년자녀의 생존과 성장에 필수적인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의 미지급액이 크다는 것은 장기간 양육비의 미지급으로 열악한 양육환경에 처한 미성년자녀들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처럼 많은 미성년자녀들이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부모로 인해 건강한 성장과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양육비 이행확보와 관련하여 현행 「가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그리고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양육비이행법)에서는 다양한 양육비 이행확보 제도를 두고 있다. 「가사소송법」에서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동법 제63조의2), ‘양육비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동법 제63조의3), ‘이행명령’(동법 제64조)등과 과태료(동법 제67조), 감치(동법 제68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⁴⁾ 한편 양육비이행법에서는 ‘한시적 양육비긴급지원’(동법 제14조), ‘운전면허정지’(동법 제21조의3), ‘출국금지’(동법 제21조의4), ‘명단공개’(동법 제21조의5), ‘형사처벌’(동법 제27조) 등의 이행강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가사소송법」과 양육비이행법등에서 다양한 양육비 이행확보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한부모가족 내 아동의 생존과 복리는 불안정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11월 10일 제21대(2020~2024) 제400회 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되었던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2118198, 이하 ‘개정안’)에서는 특히 양육비 등 이행확보에 있어서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적으로 개선하였다.

동 개정안에서는 사전적 이행확보방안의 강화를 위하여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고(개정안 제140조 제5항), 감치명령의 신청 요건이 되는 양육비 미지급 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개정안 제151조 제1항 제2호)하는 등의 내용이 규정됨으로써 양육비가 보다 신속하게 확보되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하에서는 양육비 등 이행확보 방안의 강화 필요성과 관련하여 개정안 중 사전처분에 집행력 부여와 감치명령 요건 완화 규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여성가족부,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3,300명을 대상), 2022. 5. 23.,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567, (2024. 4. 28. 방문).

2) 허민숙, “양육비이행법의 입법영향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22. 9. 13., 21면.

3)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3년 양육비소송구조사례분석”, 월간 가정상담, 2024. 4., 16면.

4) 이외에도 가사소송법에서는 미성년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재산명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48조의2 제1항).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67조의3). 또한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미성년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제48조의3 제1항).

II. 사전처분의 집행력 인정 필요성

1. 사전처분 의의

가사사건은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조치를 취해두지 않으면 당사자나 미성년자녀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복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재판의 확정 등에 의하여 형성·변경될 법률관계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보전적 조치를 미리 취하거나 임시로 사건의 해결에 필요한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조치를 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⁵⁾ 예컨대, 양육비나 부양료처럼 당사자와 미성년자녀의 생계와 생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용이 시급히 지급되어야만 하는 경우이거나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이나 면접교섭의 배제 등과 같이 미성년자녀의 신상보호를 위한 임시처분이 긴급한 경우 등에는 통상적인 가압류나 가처분의 범위를 벗어나는 임시적인 처분제도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가사소송법에서는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개정안 : 결정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을 때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 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2조 제1항, 개정안 제140조 제1항). 이를 사전

처분이라고 한다.

사전처분제도는 1990년 가사소송법 제정 시에 가사사건의 재판(판결 또는 결정)이나 조정 전에 통상의 보전처분인 가압류·가처분의 범위를 초과하는 임시적 처분을 할 급박한 필요에 따라 가사사건 전반에 걸쳐 재판 전 또는 조정 전에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한 가사소송법상 이행확보를 위한 특수한 보전처분제도이다.⁶⁾

사전처분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이나 부양에 관한 처분 등의 사건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양육비 또는 부양료를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면접교섭권과 관련하여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제한 또는 배제 하는 등의 필요한 처분을 사전에 할 수도 있다. 또한 재판상 이혼 사건에서 재판 중에 가정폭력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접근금지처분도 할 수 있다.⁷⁾

사전처분은 본안사건인 소의 제기, 심판청구(개정안에서는 결정청구) 또는 조정신청이 있을 때 할 수 있다(동법 제62조 제1항, 개정안 제140조 제1항). 사전처분신청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 판사가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이는 가사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도울 뿐만 아니라 가정법원 등이 공익적·후견적 역할로서 적정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정 내 약자의 보호를 위한⁸⁾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개입 장치로서의 기능도 담당한다. 예컨대,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청

5) 사법연수원, 「가사재판연구」, 2017년판, 29면.

6) 김원태, “가사소송법상 사전적 이행확보제도”, 「민사소송」, 제27권 2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40-241면 ;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가사(I)」, 2022, 300면.

7) 사전처분이 필요한 사건은 다음과 같다. ①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사건에서 부부재산의 사용 수익으로 인한 재산의 소비를 금지하고 보관을 명하는 것, ② 재산관리자의 변경 사건에서 현재의 재산관리자인 부부의 일방에게 재산의 일반적인 처분을 금지하는 것, ③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사건에서 혼인 중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 ④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등의 사건에서 그 분할대상인 재산의 보존을 위하여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관계인에게 그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 ⑤ 기여분의 결정 사건에서 공동상속인에게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 ⑥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 부양에 관한 처분 등의 사건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양육비 또는 부양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 ⑦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 배제 변경 사건 등에서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제한 또는 배제하는 것, ⑧ 친권의 상실, 정지, 일부제한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사건에서 친권자의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의 행사를 정지시키고 대행자를 선임하여 그 대행자로 하여금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가사소송규칙 제102조)등이 해당한다(김원태, 위의 글, 258-259면 참조).

8) 현소혜, “집행법으로서의 「가사소송법」 개정- 특히 사전처분과 관련된 개정안의 내용과 해석론을 중심으로”,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민사소송법학회, 2017, 6면.

구를 하지 않아 자녀 복리가 위태롭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미성년자녀에 대한 보호와 양육을 위한 사전처분 등을 할 수 있다.

2. 사전처분 개정안

개정안에서 양육비 등 이행확보 강화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것은 ‘사전처분에 집행력 부여’조항이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사전처분의 집행력을 명문으로 부정하고 있다(제62조 제5항).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사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처분에 집행력이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개정안 제140조 제5항). 사전처분에 집행력 부여는 양육비가 시급히 필요한 한부모가정(혹은 생활비나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해 고통받는 가정)의 안정과 복리를 기하고 사전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가. 연혁

구 가사심판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가사비송사건에서 선고 전 처분제도를 두었다. 그리고 1990년 가사소송법 제정 시에 구 가사심판법의 선고 전 처분제도가 사전처분제도로 신설되었다. 구 가사심판법 시행 당시에 선고 전 처분에 집행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 현행법상 집행력 인정의 근거 규정이 없는 점에서 부정설이 유력하였다.⁹⁾ 다만 부정설에 의하면 집행력이 없는 경우 대부분의 선고 전 처분이 유명무실 해져버리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집행력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있었다고 한다.¹⁰⁾ 그런데 1990년 가사소송법 제정 시에 민사조정 절차에서의 ‘조정 전의 처분’에 집행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민사조정법 제21조 제4항)과 궤를 같이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배제하는 입법을 하였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5항).¹¹⁾ 그 대신 과태료의 제재라는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집행을 강제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입법자의 의도와는 달리 간접강제만으로는 집행을 강제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었다.¹²⁾ 개정안에는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가사소송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법집행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가사사건 당사자 및 관계인의 이익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건이 정비되었다는 평가¹³⁾가 있다.

나. 현행 사전처분 제도의 한계

(1) 사전처분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의 한계

사전처분 제도의 한계는 현행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 위반시 제재수단인 과태료 처분의 실효성의 문제에서 크게 나타난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제67조 제1항). 과태료 부과는 의무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무시하고 사전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이 없다. 이처럼 사전처분을 어겨 비양육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과 사전처분의 실행 사이에는 현실적인 간극이 존재한다. 즉, 과태료 처분으로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임시) 양육자에게 당장 필요한 양육비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결국 권리자에게 필요한 양육비에 대하여 직접적인 회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사전처분의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만으로는 생존에 위협을 받는 미성년자녀의 생활이 직접적으로

9) 이명철, 이선미, “제5편 이행의 확보”, 가사소송법개정위원회 내부 자료집, 법원행정처, 2015. 2. 6., 252면.

10) 이명철, 이선미, 위의 글 252면.

11) 김원태, 앞의 글, 280면.

12) 김원태, 앞의 글, 280면.

13) 김원태, 앞의 글, 281면.

나아질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 양육비 확보에 있어

과태료 처분의 한계와 관련한 사안

신청인(여, 30대)은 남편인 상대방(남, 40대)에게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면서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상대방은 사전처분 결정이 나더라도 양육비는 줄 수 없다고 문자를 보내왔다. 신청인은 과태료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상대방은 과태료는 낼지언정 양육비는 안줄 것이라고 하였다. 신청인은 상담소를 방문하여 곧 양육비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사전처분 신청 절차를 거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국가에 갈 뿐 자신에게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많은 불만을 표시했다. 과태료가 부과되었더라도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현실은 그대로라는 것이다.¹⁴⁾

또한 과태료 부과는 심리적 강제를 통해 사실상 그 이행을 확보하는 기능을 담당하기는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집행’이라고는 할 수 없다.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채무자로부터 직접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직접 강제방법이 효과적이다. 이를 통해 양육비 지급 의무를 고의적으로 피하고,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양육비 채무자를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전처분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에 직접적인 강제가 가능하도록 사전처분의 집행력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¹⁵⁾

(2) 집행력 결여로 인한 사전처분의 한계

사전처분의 집행력 인정과 관련하여 실무와 학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그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2015년 법원행정처 ‘가사소송법개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가사사건을 담당하는 법관들은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이 법원의 후견적 지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⁶⁾ 즉 가사사건에서 사전처분은 일반 민사사건의 보전처분에 비하여 더욱 긴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실무 담당 법관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특히 양육권 분쟁 등 일정유형의 가사사건에서는 심리가 오래 지속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심리의 원활과 분쟁해결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실무 담당 법관의 다수 의견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었다.

● 양육비 확보 등 사전처분의 집행력 필요 사안

신청인(여, 40대)은 남편인 상대방(남, 40대)이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은 임시조치로 접근금지명령을 받아 별거 중인 상태이다. 상대방은 별거를 한 이후 신청인이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생활비를 아예 주지 않고 있다. 신청인은 생활이 어려워 주민센터에 생활비지원 등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한부모 가정으로 지정되면 이혼 소장 접수증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 등을 원하며, 소송이 끝나기 전이라도 당장의 생활비와 양육비가 필요한 절박한 상황이다. 상대방은 급여를 매달 받고 있으나 생활비와 양육비는 주지 않겠다고 하여 미성년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소송이 끝나기 전에 집행력이 있는 사전처분이 필요한 상황이다.¹⁷⁾

14)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및 소송구조 사례

15) 양육비 소송구조 실무에서 보면 양육비지급에 대한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라도 양육비 채권자들은 양육비 이행명령 위반의 경우 이행강제수단으로 과태료처분 신청을 선호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과태료는 형벌도 아니고, 실제 국가가 과태료를 받아 양육자에게 지급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인 양육비 이행강제수단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심리적 강제를 고려한다면 감치명령 신청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더욱 효과적이다.

16) 이명철, 이선미, 앞의 글, 253면

17)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및 소송구조 사례

심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가사사건의 특성상 특히 사전 처분에 따른 양육비지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미성년자녀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전처분을 집행권원으로 한 다양한 양육비 이행확보수단(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다. 개정안 주요내용

(1) 집행력을 통한 사전처분의 실효성 확보 (개정안 제140조 제5항)

개정안에서는 사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처분에 집행력이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개정안 제140조 제5항). 이에 따라 사전처분의 이행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사전처분에 관한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개정안 제142조), 담보제공명령(개정안 제143조), 이행명령(개정안 제144조) 등과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01조까지 및 제303조에서 제3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안 제140조 제6항).¹⁸⁾ 개정안에 따르면 사전처분의 유형에 따라 양육비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집행방법들이 가능하다.¹⁹⁾

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사전처분의 내용이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인 경우로서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

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다(개정안 제142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정기적 급여채권이 양육비 채권자에게 이전되며, 양육비 채무자는 양육비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는 채무자가 피고용인으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 효과적인 양육비 회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사례

채권자(여, 40대)와 채무자(남, 40대)는 2019년 협의 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3명의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채권자가 지정되었으며 채무자는 자녀 1명당 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채무자는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채권자는 생활비와 양육비 마련을 위하여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였으나 이를 홀로 부담하는 것이 역부족이었다. 이에 반해 채무자는 공공기관의 직원으로 안정적인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다.²⁰⁾

* 사전처분에 기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직접지급명령 신청 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소개함.

2) 담보제공명령

사전처분의 내용이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인 경우 또는

18) 개정안에 따르면, 사전처분의 집행절차는 이하에서 제시되는 가사소송법 특유의 집행력 확보절차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 등이 우선 적용되고,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그 성질이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사집행법 보전처분 절차를 준용한다. 이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01조까지 및 제303조에서 제312조에 의거해 사전처분을 집행할 수도 있다. 즉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과 같은 유형의 사전처분은 별도의 가압류나 가치분 절차 등을 거치지 않더라도 본안법원의 사전처분만으로도 신속히 집행할 수 있게 된다.

19)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간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구조사건 중 이행명령신청사건이 41.4%(106건)로 가장 많았고, 감치 12.1%(31건), 직접지급명령 6.2%(16건)으로 나타났다. 이행명령신청, 감치, 직접지급명령 등을 합치면 전체 이행확보 사건의 60%에 달해 양육비 이행확보의 수단으로 위 제도들에 대한 이용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0)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및 소송구조 사례

양육비 채무자가 사전처분에 따른 양육비 지급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개정안 제143조 제1항, 제2항). 현행 실무상으로는 정기적인 급여를 수령하는 양육비 채무자의 경우에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담보제공명령은 양육비 채무자가 자영업자 또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근로자일 것을 요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자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판결 확정 후에도 임의지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²¹⁾ 이러한 운용방식은 사전처분의 경우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양육비 채무자가 정하여진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금 지급을 명할 수 있다(개정안 제143조 제6항). 또한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도 있다(개정안 제151조 제1항 제1호).

3) 이행명령

가정법원은 사전처분의 내용이 ① 양육비 또는 부양료의 지급의무, ② 미성년자녀의 인도 의무, ③ 미성년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의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개정안 제144조 제1항).

현행법은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가사채무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 인도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데(제64조 제1항), 위자료나 재산

분할 의무는 일반 민사상 금전지급의무와 성질이 비슷하고 가압류 혹은 가처분 등 보전처분으로 의무를 확보할 방안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에서는 이행명령 범위에서 제외하고 현실적인 필요성이 큰 부양료, 양육비, 면접교섭 의무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육비 등 채무자가 의무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사전처분에 기한 집행력을 확보하여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서는 이행명령에 관한 사건은 그 의무이행을 명한 판결, 결정, 사전처분, 조정을 한 가정법원(고등법원이 판결, 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1심 가정법원) 또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한 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하도록 규정이 신설되었다(개정안 제144조 제2항). 다만, 미성년자녀의 양육공백 방지를 위하여 이행명령이 미성년자녀와 관련된 경우 미성년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을 관할에 추가하였다.

또한 양육비 또는 부양료 사전처분 결정에 대한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안 제151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사전처분의 내용이 미성년자녀의 인도였던 경우로서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과태료의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도 감치가 가능하다(개정안 제151조 제1항 제3호).

한편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등에 위반하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안 제147조 제1항).

21) 정용신, '이혼절차에서 미성년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제반 조치들', 『가족법연구』, 34권2호, 가족법학회, 2020년, 131-132면. 실무에서는 소송절차 중 양육비 지급의 사전처분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비양육자에게 임의지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어 장래 양육비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우나 보유하고 있는 다액의 재산이 있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등에 활용된다.

● 양육비 이행명령 사안

신청인(여, 40대)과 피신청인(남, 40대)은 2011년 이혼 조정 성립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공동으로, 양육자로는 신청인이 지정되었으며, 피신청인은 사건본인(여, 11세)의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도달할 때까지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양육비를 3회 지급한 것이 전부이며,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 또한 하지 않았다. 피신청인의 양육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이 지속되자 신청인은 친권자를 단독으로 변경하는 심판을 청구하면서 이와 동시에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법원은 미지급 양육비 20,000,000원을 20개월간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²²⁾

* 사전처분에 기한 이행명령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행명령 신청 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소개함.

(2) 사전처분 취소·변경 제도의 신설 (개정안 제140조 제2항)

개정안은 사전처분 결정 후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 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사전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컨대,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내용의 사전처분이 확정된 후 비양육자가 미성년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처분을 취소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 판사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사전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개정안 제140조 제2항).

(3) 즉시항고 규정의 정비 (개정안 제140조 제8항 및 제9항)

개정안에서는 사전처분 신청 재판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불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본안 재판의 즉시항고권자는 재판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개정안 제140조 제8항). 그러나 즉시항고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²³⁾ 즉시항고에 따른 집행정지 효력을 원칙적으로 배제하였다. 다만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일정한 담보제공 등을 조건으로 집행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혹은 집행의 계속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개정안 제140조 제9항 각 호).

III. 감치명령 요건 완화의 필요성

1. 양육비 이행확보 등에 있어 감치명령의 한계

현행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는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감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무상으로 감치는 의무 불이행시 제재 수단이 되어, 결국에는 자발적으로 의무 이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감치 절차는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를 신청할 수 있고, 감치가 결정되면 양육비 채무자는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의 감치시설에 구인된다.²⁴⁾

2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및 소송구조 사례

23) 이명철, 이선미, 앞의 글, 253면.

2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양육비 지급의 이행 강제 방법” 참조. 관련조문 「법정 등의질서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1항 등.

● 양육비 이행명령을 위반하여 감치 결정된 사안

채권자(남, 30대)와 채무자(여, 30대)는 2015년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사건본인들(남, 12세, 9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채권자가 지정되었다. 이혼 후 채권자는 양육비 청구를 하였고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25만 원 씩을 지급하도록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채무자는 조정 당시부터 양육비 전액이 아닌 사건본인 1명의 금액만을 입금해왔고, 2018년 9월부터는 이마저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채권자는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하여 이행명령을 신청하였고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채무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채권자는 이행의무 위반으로 감치를 신청하고자 법원 구조를 요청한 결과 2021년 감치 10일의 결정이 났다.²⁵⁾

‘감치명령’은 양육비 이행확보수단 중 가장 강력한 제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으나, 이행명령 이후의 양육비 미지급이 3기 이상 되어야 신청 가능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시 이행명령에서 결정되는 금액은 미지급 양육비 전액인 경우보다는 미지급 양육비 중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명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가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해 이행명령 분할 기간 및 분할 금액으로 양육비 채무자에게 과태료나 감치를 명하기에 적절한 금액을 정하는 것으로써 경제적인 능력이나 형편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명령에 따른 정기적 지급의무를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 이상을 기다려 다시 감치신청을 한 사안

채권자(여, 40대)와 채무자(남, 40대)은 2002년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채권자를 지정하고 협의 이혼하였다. 이혼 이후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다. 이에 채권자는 이행명령 신청을 통해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명령 신청을 해서 채무자에게 감치 30일을 명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채무자는 감치가 되자 감치결정이 내려진 달까지의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모두 지급하고 출소를 했다. 그러나 채무자는 출소 이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채권자는 감치결정 이후에 발생한 양육비에 대해 또 다시 이행명령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고 3기 이상을 기다려 다시 감치신청을 해야 했다.²⁶⁾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송구조사례를 통해 보면, 통상 양육비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 양육비 청구에서 판결까지 평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판결이 났음에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 주거나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 신청에서 결정까지 다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 다시 3기 이상 기다려서 감치신청을 하고 결정 받기까지 다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여 감치결정까지 평균적으로 1년 이상의 세월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이행명령부터 감치신청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아 양육자들은 이에 대한 심각한 어려움을 호소한다.

더욱이 양육비 채무자의 잠적, 위장전입 등으로 인해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송달이 안 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양육비 채무자가 송달을 회피하는 경우 등에는 공시송달절차로 감치결정에 이르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어 악의적으로 양육비 채무를 회피하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

25)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및 소송구조 사례

26)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및 소송구조 사례

비 지급 이행을 강제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와 같이 여러 절차를 거쳐야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은 시간과 노력의 소요뿐만 아니라 해당기간 동안 양육비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 양육비가 미지급되고 있는 동안에도 미성년자녀는 성장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양육환경을 제공받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는 미성년자녀에게 모두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이행명령이 감치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인지에 대한 검토와 ‘이행명령 결정 후 3기까지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요건을 완화하여 신속한 감치결정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현장의 소리이다.²⁷⁾

● 채무자 소재지 불명으로 인해 양육비 확보가 어려운 사안

채권자(남, 40대)는 채무자(여, 30대)의 가출로 2016년 재판상 이혼하였고,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채권자가 지정되었다. 채무자는 2016년 5월부터 자녀의 양육비로 1명당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가출로 충격을 받아 쓰러졌고 뇌졸중 후유증으로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채무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조업 관련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2019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채무자는 바로 퇴사하였다. 뒤이어 재산명시를 신청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각 하되었다.

2020년 이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 결국 공시송달로 이행명령이 결정되었다. 채권자는 감치를 원하고 있으나 송달불능으로 사건진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²⁸⁾

위와 같이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법원의 송달을 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제도적인 부분을 악용하여 공시송달이 되게 하는 경우, 이행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감치명령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제도 보완 마련도 시급하다.

2. 제재 수단으로서의 감치명령 개정의 필요성

감치결정 자체는 지금까지 양육비채무자에게 양육비를 이행하도록 압박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처분인 감치는 형사처벌에 준하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상담현장에서는 감치 신청을 했더니 상대방이 비로소 양육비를 지급했다는 사례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감치제도는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다.

(1) 감치명령 요건 구비까지 장기간 소요

감치명령 요건 구비 시까지 지나치게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간헐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감치명령이 불가능하여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이것은 감치 결정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했던 양육비 채권자들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이기도 하다.

(2) 감치를 피하기 위한 제도 악용

감치명령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감치에 처함이 상당하지 않거나 재판기일까지 의무이행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불처벌의 결정을 한다. 따라서 감치명령 신청이 들어가면 채무자가 비로소 일부를 지급하여 감치명령 인용 결정을 피하고 있는 현상도 보인다.²⁹⁾

27)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9년 양육비소송구조사례분석”, 월간 가정상담, 2020. 7., 12면; “2020년 양육비소송구조사례분석”, 월간 가정상담, 2021. 4., 21면; “2021년 양육비소송구조사례분석”, 월간 가정상담, 2022. 4., 14면; “2022년 양육비소송구조사례분석”, 월간 가정상담, 2023. 4., 17면; “2023년 양육비소송구조사례분석”, 월간 가정상담, 2024. 4., 19면,

28)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및 소송구조 사례

29) 양육비소송구조 실무에서 보면, 밀린 양육비를 10회로 나누어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경우 8회기까지 지급하고 2회기 부분은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3기 이상의 불이행이라는 감치명령의 요건을 교묘히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경우

(3) 일시금 지급과 정기금 지급 사이의 형평성

한편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의 불이행의 경우에는 감치의 요건이 30일(현행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3호)인 것에 비해, 정기금지급의 경우 3기여서 사실상 3개월(90일) 이상인 점도 형평에 맞지 않고, 3기(期)라는 표현은 불명확하여 일자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어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들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시급한 제도로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44.4%)에 이어 ‘미이행자 처벌 강화’(31.5%)라고 답했으며, ‘미이행자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5년 23.4%, 2018년 29.9%, 2021년 31.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³⁰⁾ 감치 요건을 완화 하는 등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가 보다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감치명령과 이행명령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사안

채권자(남, 30대)와 채무자(여, 20대)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채무자가 매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채무자는 이혼 직후부터 간헐적으로 모두 약 7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였으나 미지급된 양육비는 2,500만 원이 넘게 되었고 이행명령 결정을 받게 되

었다. 그러나 채무자는 연락을 피하며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았다. 채권자는 양육비 이행을 촉구하고자 감치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채무자가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자 불처벌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후 채무자는 양육비를 또다시 지급하지 않았고 채권자는 감치명령 신청을 위해 이행명령 신청을 했다.³¹⁾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에서는 제151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즉, “1. 제143조 제6항에 따른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양료 또는 양육비의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4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미성년자녀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147조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위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이행명령 또는 일시금 지급명령을 한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고 하였다. 양육비 이행확보 강화방안과 관련하여 사전처분에 집행력 부여와 함께 가장

에 따라서는 판결에서 2회로 나누어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후 한 번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감치명령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사례도 있다

- 30) 여성가족부,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또한 위 조사 중 최근 1년간 법적으로 결정된 자녀 양육비 지급 채권이 있는지와 관련한 결과를 보면, 양육비 채권이 없는 경우가 전체 이혼·미혼 한부모의 78.7%, 정기지급과 일시지급 중 한 가지 이상의 채권이 있는 경우가 21.3%로 나타났다. 법적 양육비 채권은 정기지급이 19.9%, 일시지급이 1.1%, 두 가지 모두 있는 경우가 0.3%였다. 양육비 수급여부는 법적 채권의 유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부모의 대부분(78.7%)을 차지하는 법적 양육비 채권이 없는 이혼·미혼 한부모 중 양육비를 정기지급 받은 비율은 2.6%에 불과하며, 지급 받은 정기·부정기 금액은 평균 월52.5만원 수준이었다. 반면 아직 소수인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20.2%) 중 실제로 정기지급 받은 비율은 63.8%로 2018년 61.1%에 비해 2.7% 증가하였다. 그리고 지급 받은 정기·부정기 지급금액은 월 62만원으로 2018년 월 56.0만원에 비해 6만원 높은 수준이었다.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567, (2024. 4. 28. 방문).

- 3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및 소송구조 사례

주목되는 것이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감치를 명할 수 있도록 현행 3기의 요건을 완화하였다는 점이다.

가. 감치명령 요건 완화

(개정안 제151조 제1항 제2호)

개정안에서는 감치명령 요건인 법원의 이행명령 후 의무불이행 기간을 '3기 이상'에서 '30일 이내'로 완화하였다. 따라서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채무자가 30일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감치신청이 가능해 현재보다 훨씬 단축된 기간 안에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해졌다. 개정안에서는 금전의 지급에 관한 이행명령을 '부양료, 양육비'로 한정하는 대신 감치의 '3기 이상'이라는 요건을 완화하여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 위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30일로 통일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이행명령에서 사안의 구체적 사정(예컨대,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현재는 소득이 없으나, 몇 개월 후에는 소득이 생기는 경우를 상정해 보면, 수 개월치의 양육비를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음)에 따라 일시금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도 이행확보의 강력한 필요성이 있으므로 현행 조문상 '정기적'이라는 문언은 삭제되었다.

나. 미성년자녀 인도청구의 집행규정 신설

(개정안 제145조)

개정안은 미성년자녀 인도청구의 집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현행 「가사소송법」에는 미성년자녀의 인도를 독립된 사건유형으로 정하지 않고 제42조 가집행에 관한 규정과 제5편 이행의 확보, 제6편 벌칙에서 유아의 인도에 관한 내용을 단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녀의 인도 집행을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속하는데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에는 미성년자녀의 인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이 없어 이번 가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이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안에서는 인도의 대상을 유아에서 미성년자녀로 확대하고 집행법원을 가정법원으로 하였다(개정안 제145조 제1항). 개정안 제145조 제2항에서는 미성년자녀 인도청구의 집행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이행명령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일반적인 강제집행 절차와는 달리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의무자의 자발적인 의무이행을 유도하는 이행명령을 우선적으로 시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이다. 다만 이행명령 및 그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와 이행명령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행명령과 관계없이 인도청구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개정안 제145조 제3항은 미성년자의 복리 보호를 위하여 집행법원이 인도청구 집행의 허가여부를 결정할 때에 "1. 자녀의 연령 및 의사능력 유무, 2. 자녀의 의사, 건강 및 심리상태, 3. 자녀의 양육상황, 4. 당사자와 자녀 사이의 상황 및 집행에 따라 자녀가 영향을 받는 정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개정안 제145조 제3항 각호). 개정안 제145조 제4항에서는 집행법원이 미성년자녀 인도청구 집행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미리 당사자와 미성년자녀를 심문하고 의무이행을 권고하도록 규정하였다. 개정안은 제20조에서 미성년자의 진술청취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면서도 각 사안별로 미성년자의 진술청취권 보장을 보장하고 심문을 할 수 있도록 두터운 보장을 하고 있다.³²⁾ 개정안 제145조 제5항은 집행관이 미성년자녀의 인도 집행을 할 때 "세심한 주의를 하여 인도(人道)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고 자녀의 자유와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인도 집행시의 유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32) 송효진, "가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고찰 이행의 확보 및 관할에 있어서 미성년자녀의 복리 보호를 중심으로", 「법조」, 제66권 제3호, 법조협회, 2017.6, 454면.

IV. 결론

재판상 이혼이나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혹은 변경 등의 가사사건의 경우, 심리가 오래 지속되는 특성상 사건 진행 중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거나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해 본안 심리나 조정, 판결 등에 앞서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거나 면접교섭을 인정하는 등의 사전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전처분의 특성 때문에 과태료 부과 등의 간접적인 제재만 가능하다.

사전처분은 모든 가사사건을 본안으로 하고, 후견적 위치에서 가정법원의 적극적 처분을 본질로 한다. 따라서 그 집행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적극적으로 미성년자의 복리를 보호할 수 없고 그 결과 사회적으로 취약 계층인 이혼 가정에서의 미성년자녀 권리 보호도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위에서 검토했듯이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입법적 불비였다는 점, 실무에서 사전처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집행력을 부여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점, 사전처분에 집행력이 없음으로 인해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간접적인 제재에 그쳐 권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그리고 소송 진행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보호가 소홀해지거나 공백이 발생하는 점 등은 현행 사전처분의 명백한 한계점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전처분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한 다양한 양육비 등 이행확보가 가능하도록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인정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함으로써 직접 강제가 가능하게 되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시조치의 효력을 기하고 가사사건의 당사자 및 미성년자녀의 이익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보호하도록 한 점에서 국회에서의 신속한 법안 통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상담현장에서 보면 대부분의 양육자들은 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있고, 이에 더하여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까지 지급받지 못하여 자녀의 복리

또한 위협받고 있다. 또한 법원의 결정을 받았더라도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는 일은 한부모가족에게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는 적어도 최소한 몇 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양육자가 양육비를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지급받기는 상당히 어렵다. 또한 소송이 끝나더라도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은 양육자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

감치는 현행법상 강력한 양육비 이행확보 수단의 하나이다. 양육비 지급 미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감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감치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으나(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감치명령결정 후 또 다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감치명령도 이행명령이 결정된 후 해당 명령을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았을 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감치가 결정되기까지의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당해 양육비 특성 등으로 인해 법원이 3기 이상을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에는 비양육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의무위반으로 인한 감치를 신청할 수조차 없다. 더구나 채무자가 감치를 피하기 위해 3기째에 양육비를 지급하고 다시 양육비를 끊어버리거나 간헐적으로 지급하여 이행명령 신청부터 다시 시작하는 사례들도 볼 수 있다. 또한 소송구조 사례에서는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신청을 반복해야 하는 양육자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된다.

이처럼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이행강제를 위한 절차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기간 동안에도 양육비는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개정안 제151조 제1항 제2호는 이행명령에 의해 ‘부양료, 양육비의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바로 감치가 가능함을 명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이 미성년자녀의 생계와 복리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양육비 등의 이행확보를 위한 수단들을 강화한 가사

소송법 개정안은 양육비 지급불이행으로 고통 받는 미성년 자녀와 한부모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양육비 등 이행확보는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녀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위한 좀 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양육비

등 이행확보방안이 「가사소송법」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서는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시행되기 바란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참고문헌

사법연수원, 「가사재판연구」, 2017.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가사(I)」, 2022.

김원태, “가사소송법상 사전적 이행확보제도”, 「민사소송」, 제27권 제2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23.

송효진, “가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고찰 이행의 확보 및 관할에 있어서 미성년자녀의 복리 보호를 중심으로”, 「법조」, 제66권 제3호, 법조협회, 2017.

이명철, 이선미, “제5편 이행의 확보”, 가사소송법개정위원회 내부 자료집, 법원행정처, 2015. 2. 6.

정용신, “이혼절차에서 미성년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제반 조치들”, 「가족법연구」, 제34권 제2호, 가족법학회, 2020.

허민숙, “양육비이행법의 입법영향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22. 9. 13

현소혜, “집행법으로서의 가사소송법 개정- 특히 사전처분과 관련된 개정안의 내용과 해석론을 중심으로”,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7.a

법제처,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2. 5.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mid=a10104010000&lawSeq=68284&lawCd=0&lawType=TYPE5>, 2024. 4. 28. 방문

여성가족부, “2021년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8567, 2024. 4. 23. 방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양육비 지급의 이행 강제 방법”,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5&cciNo=3&cnpClsNo=3>, 2024. 4. 28. 방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9년 양육비소송구조사례분석”, 월간 가정상담, 2020. 7.

“2020년 양육비소송구조사례분석”, 월간 가정상담, 2021. 4.

“2021년 양육비소송구조사례분석”, 월간 가정상담, 2022. 4.

“2022년 양육비소송구조사례분석”, 월간 가정상담, 2023. 4.

“2023년 양육비소송구조사례분석”, 월간 가정상담, 2024. 4.

<https://lawhome.or.kr/new21/law04/sub01/list.asp>, 2024. 4. 28. 방문

나와 가족의 행복한 관계를 위한 정신건강 챙기기 (4)

II. 주제 및 내용

제 1 강 모든 정신적 어려움의 근원, 성격장애

3. 결론

성격장애에 있어 중요한 것은,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주관성에 경도되어 있기에 자신이 자신을 스스로 파악하고 치유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타인과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며 자기 삶을 조금이나마 객관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성격 자체는 변화되기 어렵지만 자신의 성격특성을 인정하고 일상의 습관을 바꾸나간다면 삶이 조금씩 변화될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자신의 대화 방식을 돌아보며 습관을 고칠 수 있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의 특징을 보

면 서로 주고받는 말이 아름답다. 그러나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부부는 서로가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알아주기만을 원하고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표현하면서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고통에 대한 인내심이 낮다. 조금만 자신이 생각한 것과 달라져도 무시당했다, 상처를 받았다 생각하고 더 크게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 과도한 분노표출과 거친 언행이 습관화되어 자신이 그렇게 격분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고 믿고 있는데, 사실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감정조절 되지 않았던 대부분의 상황이 굳이 분노를 표출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아무 일 없이 넘어가는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의 성격은 한꺼번에 달라지기 쉽지 않지만, 우리의 습관을 바꾸면 삶이 바뀔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상담소는 일찍부터 우리 사회에 가정폭력의 문제를 제기하여 가정폭력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냈으며, 가정폭력행위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및 중단, 재발방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족관계 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등지교실 강좌는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통하여 법적 처분을 이행하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자기성찰과 태도변화를 도움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회복하는 데 매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가정폭력예방지침서'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는 상담소는, 이번에 8차로 「등지교실 - 나와 가족의 행복한 관계를 위한 정신건강 챙기기」를 발행하였다. 이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본 상담소에서 진행한 '등지교실' 강의를 재구성한 것이다. 이 지침서는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을 챙기고 더 나아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것이기에 <가정상담>에도 이 자료를 게재한다.

제 2 강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만드는 분노 및 충동조절장애

■ INTRODUCTION

우리가 분노를 표출하면 몸이 먼저 반응한다. 근육이 긴장하고, 땀이 흐르고, 손을 쥐는 등의 반응이 나온다. 우리는 분노에 익숙하지만, 정작 어떻게 분노를 잘 조절하고 표현할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 이번 기회를 통해 분노의 다양한 측면을 배우고 우리가 어떤 이유로 분노하게 되는지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 POINT

1. 서론

우리의 몸 상태는 분노와 직결되는 부분이 있다. 어떤 이는 공복 상태에 화가 더 잘 나기도 하고, 몸이 잘 쉬지 못하면 사소한 일에도 어마어마하게 화를 내곤 한다. 이렇게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것을 간헐적 폭발성장애(Intermittent explosive disorder)라고 한다. 정확한 정신과 진단명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이를 분노조절장애라고 표현한다. 사람들은 화가 나면 생각보다는 몸이 먼저 반응해 공격성을 표출한다. 어떤 이는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거나, 동물을 학대하고, 타인에게 직접적인 손상을 입히지는 않아도 물리적 공격을 하기도 한다. 최소 3개월을 놓고 보았을 때 매주 2회 이상 이런 모습이 보이면 간헐적 폭발성장애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기물 파괴나 동물 및 타인에게 직접 손상을 가할 정도의 일이 12개월 내 최소 3번 발생하게 되어도 간헐적 폭발성장애 기준을 충족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고통받고 자신의 자존감이 손상되었다고 느낀다. 그들의 과도한 공격적인 행동은 자신이 무시되었다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중요한 것은 생각은 생각일 뿐이고, 자신의 생각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상대가 나를 무시했다.’, ‘상대가 의도적으로 내 자아를 훼손시켰다.’ 등의 일방적인 자기 안의 생각을 믿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2. 본론

본격적으로 분노에 대해 알아보자. 분노는 단순히 ‘화가 났다’라는 상태만이 아니라 신체, 사고, 행동에 영향을 주는 다차원적인 정서적 특질이다. 우리가 화가 날 때는 여러 매커니즘이 작동하고 이는 심리적 요소와도 관련이 깊어 나의 신체와 생각, 행동에 영향을 준다. 분노는 크게 상태분노와 특성분노,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상태분노는 상황이나 시간에 따라 강도가 변할 수 있는 정서 상태로, 분노의 경험이 일시적이다. 반면 특성분노는 개인의 분노 경향성으로, 상황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강하게, 폭발적으로 비교적 지속해서 나타나는 개인의 성격 특질이다. 분노할 때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속이 거북해지고, 소화가 안 되고, 두통이 생기고, 표정이 굳는 등의 신체적 변화가 생긴다. 또한 ‘무언가 잘못됐다, 부당하고 교정해야 한다. 나를 화나게 하는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등 생각의 변화도 수반된다. 상대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괴롭히고자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고 보복하고 응징하는 상상을 하게 된다. 이러한 간헐적 폭발성장애나 분노조절장애는 어떤 행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면 응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해서 과도하게 확대시킨다. 생각이 과잉되면 현실적 수준을 넘어서게 되고 그렇게 되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망상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망상이다.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는 분노를 억제하는 유형이다. 분노를 표현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무조건 참고 삭히는 것이다. 둘째는 분노를 표출하는 유형이다. 분노가 더 이상 통제되지 않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쏟아져 나오는 것이다. 셋째는 분노를 조절하는 유형이다. 감정을 조절하고, ‘내가 이런 것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났구나’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표현하는 것이다.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자신과 타인 모두를 손상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기에 분노 억제나 표출에서 벗어나 분노를 건강하게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노 억제가 표출이 과도해지면 역기능적 분노 행동이 나타난다. 이는 다양한 심리 장애나 신체 질환을 초래한다. 특히 분노 억제가 심하면 우울감, 절망감, 자살

위험성이 높아지고, 분노표출이 심하면 심혈관계나 소화계 질환 역시 올 수 있다.

< 사례 >

‘아내는 남편을 절대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명제를 믿으며 살아가는 남편이 있다. 이러한 당위적 요구를 내재화한 남편은 자신이 출근할 때 아내가 자기 일만 하고 있자 아내가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한다. 자신은 밖에 나가 고생을 하며 홀로 희생적으로 일했다는 생각에 아내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육하고 올라왔다.

〈사례〉의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우습게 여겼다는 생각에 모욕과 상처를 느꼈다. 또한 자신은 희생자라는 생각에 어마어마한 분노가 올라왔다. 어떠한 사건을 해석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다.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차적인 생각을 통해 분노가 형성되는 매커니즘을 보인다. 그러나 실상 일어난 상황은 사실 별것 아닐 수 있다. 아내가 아이를 돌보거나, 설거지하거나, 출근 준비를 하느라 바빠 남편을 챙기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분노 사고와 비합리적 신념은 자신이 주로 이해, 배려, 존중받지 못했다는 과도한 자의식 고양의 결과일 수 있다. 분노 상황에서 자신의 가치관이 훼손되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남편과 같은 사람들은 스스로 낮은 자존감을 느끼고 있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과도하게 예민하게 반응한다. 자신의 기준에 조금이라도 상황이 어긋나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며 감정동요가 일어나면서 이것이 분노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역기능적으로 타인에게 보복하고 응징하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가볍다. 즉 어떤 상황이든 무겁게 인식하지 않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상황에 임한다. 무겁게 상황을 인식하면 안 좋은 생각의 늪에 빠질 수 있고, 무겁고 둔탁한 생각과 감정이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

어질 수 있다. 또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뻔뻔하다. 얽치없다는 의미의 뻔뻔함이 아니라 탄력성이 있다. 마음속에 고무공이 있는 것처럼 심리적 유연성을 보인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굳이 그 사람의 말을 가져와서 자기 문제를 만들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저 사람 말투가 그래’, ‘저 사람 스타일이야’, ‘저 사람 오늘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나’라며 탄력적으로 대처하면서 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요컨대,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비하하고, 남까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구도를 반복한다면, 이는 분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문제의 핵심은 내 안에 있다는 생각이 필요하다. 분노 역시 내 안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야 한다. 나의 결핍과 상처에서 분노가 비롯하는 것을 인정해야 상대에 대한 공격성이 누그러진다. 이러한 분노 문제는 ‘돌봄’을 통해 풀어나갈 수 있다. 원래 ‘돌봄’(care)은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고난에 동참하고 고통을 나눈다는 뜻이다. 이것을 자신에게 적용하면 자신에게 자애롭다는 뜻의 자기자비(self-compassion)일 수 있다. 자신을 무시하고 타인이 문제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신부터 돌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신에게 어떻게 따뜻해질지가 관건이다. 자신에 대해 평가하고 등급을 매길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에게 부담 지우지 않는 자기 자비가 필요하다. 내 언어를 바꾸고 태도를 바꾸며 나를 바꾸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3. 결론

분노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모두 영향을 준다. 분노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나를 따뜻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할 것이다. 바닷가에 파도가 몰아치면 바닷속을 볼 수 없다. 파도가 잔잔해야만 그 바닷속이 보인다. 이처럼 자신에게 따뜻해지면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다. 타인을 깎아내려 자신을 방어하려 했던 것에 대해 더 이상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 나는 잘했든 못했든 언제든 격려받을 수 있고, 축복받을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창립 50주년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새 회관 (4)

2007년 12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회관 완공 및 입주

2008년 3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회관 신축 기념식

회관 건축의 공익성을 확인한 복권기금의 수혜

반세기 역사를 주춧돌 삼아 여의도 한강 변 여성백인회관 터에 튼튼하고 현대적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회관이 문을 열기까지, 건축 결정부터 시작하여 한 가지도 쉽게 이루어진 것이 없었다. 무엇보다 처음 예상과 달리 시간이 가면서 늘어난 약 140억 원에 이르는 건축비용은 참으로 부담스러운 액수였다. 상담소를 찾는 내담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모든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진행하며 궁극적으로 백 년 앞을 내다보며 튼실한 기반 위에서 법률구조 사업을 펼쳐보겠다는 순수한 각오와 의지가 없었다면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착공 후에도 상당 기간 건축기금을 마련하는 일에 여력을 소모해야 할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렇듯 목마르고 애탄 상황에서 회관 신축의 실질적인 책임자였던 광배희 소장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냈다. ‘복권기금’이 그것이었다.

복권기금은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 이 기금은 복권위원회가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1항에 따라 기금의 30%는 법으로 정한 사업 그리고 70%는 복권위원회에서 선정한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다. 광배희 소장은 이러한 복권기금법에 주목하여 상담소의 주무부처인 법무부를 통해 복권기금을 신청하기로 결심하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 보았다. 이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법률 복지사업’ ‘가정폭력 피해 여성 중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의 토대가 되는 상담소 회관 건축에 공식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층 가정 및 취약계층에 대한 법

률구조 서비스와 가정문제 예방·교육을 종합적인 체계에 따라 원스톱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증가하는 이혼율에 대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고 위기 가정 및 한부모가정, 노인가정, 가정폭력가정 등을 지원하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기본단위인 가정의 해체를 방지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며 국민의 복지향상과 가족복리를 구현한다는 상담소 사업의 내용을 담았다. 즉 법률구조사업의 영속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설을 보강한다는 상담소 회관 건축의 취지를 하지만 복권기금은 정부 각 부처에서 정기적으로 집행하는 예산 외에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쓰이는 것으로 민간단체에는 기금을 주었던 전례가 없었을 뿐 아니라 더욱 건축기금으로 거금이 주어진 사례가 없었다는 사실 때문에 큰 난관에 부딪혔다. 그리하여 광배희 소장은 2년여 동안 법무부와 복권위원회를 셀 수 없이 오가며 상담소 회관 신축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가운데 상담소에 대한 이해가 깊고, 사업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는 지인들의 도움을 얻어 마침내 회관 건축비의 상당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복권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회관 신축 비용에 대한 걱정을 상당 부분 해결해 주는 동시에 상담소가 우리 사회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공적 기관임을 사회적으로 다시 한번 확고하게 인정받고 법률로도 사업의 영속성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이처럼 법무부 산하 법률구조법인으로서 상담소의 회관은 기부채납의 형식으로 건물 신축을 마무리하게 되었으며, 회관 1층 현관에 이와 같은 취지의 현판을 새겨 상담소가 우리 사회의 공적 자산임을 분명하게 밝혀 두었다.

편집부

*** 상담소는 지난 2016년을 창립 60주년의 해로 보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백년을 향해 나아간다는 전망을 세운 바 있다. 이러한 전망의 토대로 삼고자 상담소의 역사를 바로 알고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담소의 연대기를 연재한다. 상담소는 지난 2009년 「변민하는 이웃과 함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를 펴낸 바 있으며, 이 연재는 이를 기초자료로 하였다.

상담하며 서로 바라는 바를 위해 노력하다 보면 부부 생활의 만족도 급속하게 향상

2021버1*** 폭행/ 2021버1***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3회,
 교육강좌 3회(화상회의 플랫폼 줌
 (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
행위자(아내)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1회,
 교육강좌 1회(화상회의 플랫폼 줌
 (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
 자조모임 4회(비대면 실시)
부부상담 3회 등 19회

상담기간

2021. 9. 6. ~ 2022. 3. 31.

상담경과

부부는 2020년에 결혼하였고 부부 사이에 1녀(2세)가 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전 남친으로부터 얼마나 잘사는지 보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 남편이 알면 화를 낼까 두려워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2021년 3월 사건당일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화를 내고 다툼 중에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수차 폭행하였으며, 아내는 이에 대항하여 남편의 배 위로 좌식의자를 던지는 폭행을 하였다. 부부 상호간 폭행을 하여 함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

치되었고, 본소에 6개월간 상담위탁되었다.

부부는 결혼 초기이고 어린 자녀도 있어 혼인을 유지하겠다는 의사가 강하였다. 따라서 서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아내는 남편이 욕하지 않고 감정 조절하기를, 남편은 아내가 자기주장만 하지 말고 남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기를 바랐다. 부부는 상대방의 바람을 인정하고 그에 부응하여 아내는 자기주장만 하지 않기, 남편은 욕하지 않고 감정조절하기를 실천과제로 정하였다.

중간 점검시 부부는 합의한 대로 실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남편은 아내가 평소 남편을 무시하지 않았고 참는 노력을 선행한 후 해결하여야 할 과제를 이야기하였음을 평가하였다. 아내는 남편이 법적 제재에 대한 책임을 인식한 것과 가사와 양육에 동참하는 노력을 평가하였다. 부부 상호간 폭력을 재발하지 않았고 화를 내거나 충돌하지 않았으며 소통을 잘하고 있었다. 이에 남은 기간 상담계획을 수립하고 계속 노력할 것을 격려했다.

종결 상담에서 아내는 사건 당시 부부관계만족도는 0점, 종결 상담시는 10점 만점에 8.5점으로, 남편은 사건 당시와 종결 상담시 모두 부부관계만족도를 10점 만점에 5점으로 평가하였다. 중간 점검 시보다 남편의 만족도 척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내의 변화 여부에 무관하게 노력하고 수용하며 살 것을 다짐하였다. 미래 계획으로 남편은 약속을 잘 이행할 것을, 아내는 역지사지의 마음갖기를 각자 실천과제로 정하고 노력을 다짐하며 상담을 종결하였다.

2021버1***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6회, 전화상담 1회,
 교육강좌 3회(화상회의 플랫폼 줌
 (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
 집단상담 4회(비대면 실시)
피해자(아내) 전화상담 1회
등 15회

상담기간

2021. 10. 6. ~ 2022. 4. 5.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지 12년이 경과하였으며 부부 사이에 1녀 1남(12세, 9세)이 있다. 행위자는 2021. 3. 사건당일 피해자가 자신과의 저녁 식사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친정어머니와 저녁 식사를 한 것에 화가 나 귀가 후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미는 폭행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본소에 상담위탁되었다. 부부는 사건 이후 2021. 9.에 OO신도시 새 아파트로 평수를 넓혀 이사하였는데 환경 변화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원만하게 지내고 있었다.

사건이 발생하게 된 갈등 원인을 점검한 결과, 장인이 별세하면서 남긴 재산(예금)을 장모 혼자 상속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의논이 없었던 점을 섭섭해한 행위자가 이전과 달리 처가 일에 소극적으로 임하던 터에 본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다. 행위자의 심정에 공감하는 한편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와 현 상황에서 바람직한 행동이 무엇인지 숙고해 볼 것을 당부하였다.

중간 점검시 행위자는 사건 당시 부부관계만족도는 10점 만점에 4~5점, 현재는 10점 만점으로 평가하였다. 만족도 향상 요인으로 섭섭했던 마음을 정리하기로 스스로 마음을 정하였고, 가족구성원 모두 각자 맡은 일을 하며, 집안일

에 대한 정보 공유 특히 행위자가 몇 년 전부터 바랐던 생활비 사용 정보를 피해자가 공유하는 점 등을 꼽았다. 그 결과 부부간 폭력대화 횟수가 많이 줄었으며 가족여행을 다녀왔고, 가까운 시일에 또 갈 계획을 세울 정도로 부부 및 자녀들과의 관계가 많이 회복되었다.

피해자는 결혼 후 6년 동안 시부모가 8형제의 막내인 행위자 집에 자주 오면서 힘들어져 횟수 조정을 바랐으나 행위자가 이를 조정하지 못하여 갈등이 심해지면서 시부모에게 가지 않게 되었고 지난 추석에도 행위자는 아이들의 동행 거부로 혼자 부모 집에 다녀왔으며 피해자는 아이들과 함께 모친 집에 다녀왔는데 이를 안 행위자가 계속 빠져있다고 하면서 사건 당시와 중간 점검시 부부관계 만족도를 모두 10점 만점에 3점으로 평가하여 행위자의 의견과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폭력이 재발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고, 만일 폭력이 재발된다면 이혼할 의사도 확고하였다.

종결 상담시 행위자는 피해자와의 관계 만족도를 10점 만점에 8점으로 평가하고, 피해자의 잔소리가 없어진 점을 좋아진 점으로 꼽았다. 보완점으로 피해자가 이전과 달리 자신의 말을 전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확인하는 점이 개선되기를 바랐다. 행위자는 절대로 폭력을 재발하지 않을 것이고 상담기간 중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고 하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며 상담을 종결하였다.

2021버1***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아내) 개별상담 2회, 자조모임 5회(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
피해자(남편) 개별상담 2회, 집단상담 6회
 (비대면 실시)
부부상담 7회 등 22회

상담기간

2021. 10. 7. ~ 2022. 4. 4.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지 4년이 경과하였고 부부 사이에 1녀(4세)가 있다. 행위자는 외국인으로 통역가이드를 하다 피해자를 만나 결혼하고 한국에 왔는데 5개 국어를 하고 간호사로 일한 경력이 있다. 행위자에 의하면 피해자인 남편은 결혼 초부터 폭력을 하였고 말다툼을 하면 아이를 데려가고 행위자에게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등 무시, 모욕하였다. 2021년 6월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는 부부싸움 후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는데 행위자는 부엌칼로 방문을 내려찍으며 “문을 열어라, 병신같은 00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찌를듯한 행동을 보이며 협박하고, 부엌칼로 안방문을 약 8회 찍어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지 방문을 손괴하였다. 행위자는 이러한 가정폭력으로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본소에 상담위탁 되었는데 재판부는 보호처분 결정 이유에 피해자도 상담을 받도록 권하였다.

부부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았으며 함께 상담에 임하였다. 행위자는 사건 발생 시 가지고 있던 칼을 피해자가 빼앗는 과정에서 손가락 인대가 끊어져 수술을 받은 후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행위자는 피해자가 다른 집 아내들이 돈 버는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불편하다면서 이를 자제해 주기 바랐고 향후 취업의지를 다졌다. 한편, 피해자는 행위자의 음주문제를 갈등요인으로 꼽으며 개선되기를 바랐다. 부부는 모두 상대방이 바라는 바를 실천하려고 노력하였다.

종결 상담시 부부관계는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행위자는 사건당시 부부관계만족도는 마이너스 점수, 종결상담시는 10점 만점에 7~8점으로, 피해자는 사건당시 부부관계만족도는 0점, 종결 상담시는 10점 만점에 8점으로 평가하였다. 만족도가 향상된 이유로 피해자는 직장을 옮기면서 자가용으로 출퇴근하게 되어 스트레스가 줄었고, 행위자가 가사를 잘하며 아이를 잘 돌봐주는 점을 꼽았다. 또한, 행위자는 부부시간을 많이 가졌고, 자신의 의견을 피해

자가 들어주려고 노력하였으며, 최근 파트타임으로 취업하여 자존감이 높아진 점을 꼽았다. 부부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잘 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보완점으로 부부가 꼽은 바와 같이 행위자에게는 남편의 칭찬, 피해자에게는 아내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인식하도록 하였다. 부부는 상담종결 후에도 실천과제를 정하고 노력하기로 약속하였는데 행위자는 피해자가 새로 시작한 대학 공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가사와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피해자는 행위자 칭찬하기를 실천하기로 하였다.

약속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2021버1***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1회,
집단상담 4회(화상회의 플랫폼 줌
(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1회, 전화상담 1회
부부상담 7회 등 16회

상담기간

2021. 10. 13. ~ 2022. 4. 12.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지 4년이 경과하였으며 부부 사이에 1녀 1남(3세, 1세)이 있다.

행위자는 2021년 3월 사건당일 피해자와 처가 식구 문제로 말다툼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뚝과 뺨을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본소에 상담위탁되었다.

갈등요인으로 피해자는 행위자의 가부장적 사고, 시가 및 처가와의 갈등을 꼽았고, 행위자는 성격차이를 꼽았는데 사건 발생시 피해자의 폭행도 있었다고 호소하였다. 부

부 모두 결혼을 유지하겠다는 의사가 확고하였고 성실하게 상담에 임하기로 약속하였다. 상담에 대한 기대로 행위자는 피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기, 피해자는 행위자가 대화 중 안정적인 감정을 유지하기 바랐다. 부부는 상호 바라는 바를 실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육아와 관련한 구체적인 역할분담 및 실천과제에 합의하였다.

중간 점검시 피해자는 행위자의 육아참여노력을 인정하고 가치관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평가하였다. 피해자를 변화시키려고 했던 행위자가 이제는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쪽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행위자의 변화 및 현재 부부관계에 대하여 만족감을 표하였고 폭력이 재발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

종결 상담시 행위자는 과거 피해자와 자주 충돌했던 까닭을 ‘자신도 어리고 피해자도 어리고, 육아는 힘들고, 직급

이 낮아 직장 스트레스가 많았던 점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되돌아보았다. 지금은 싸운 날을 손으로 꼽을 정도이고 말다툼도 심하게 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이전에는 피해자와의 대화를 일방적으로 회피하는 일이 많았지만 이제는 서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타임아웃을 통해 충돌을 피하고 상호 존중하는 호칭을 사용한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부부관계만족도는 마이너스 점수, 종결 상담시는 10점 만점에 8점으로 행위자의 긍정적인 변화를 평가하면서도 갑자기 예민해지거나 욱해지는 등 감정조절이 안되는 점이 더 개선되기를 바랐다. 그동안의 노력을 격려하고 향후 노력에 따라 부부관계가 더 개선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상담을 종료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2024년 4월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 진행 현황 〉

구분	프로그램명	날짜	참석인원	주제	강사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개별상담/부부상담/ 가족상담	연중			본소 상담위원
	라오니모임	4/4	9명	의심, 피해망상, 그리고 조현병	장희숙 교수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18	13명	생각 바꾸기	
가정폭력행위자 성행교정 프로그램	개별상담/부부상담/ 가족상담	연중			본소 상담위원
	집단상담	4/3	8명	가족관계의 비결, 소통	이서원 대표 (한국감정케어센터)
		4/17	9명	소통의 부재, 고집불통 이야기	
		4/24	9명	감정의 비밀, 소통의 열쇠	
	등지교실	4/17	44명	화난 나를 인정하라 : 火解하기① (+인정치료)	이서원 대표 (한국감정케어센터)



를 반복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그 아이는 귀하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① - 친자의 성, 친생자 ③

● 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출산한 경우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

Q 문 6 | 저는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에 아내가 저의 동의 하에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 방식으로 아이를 출산하였고 제 아이로 출생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저를 잘 따르지 않아 정이 없고, 아내와의 불화도 심해 이혼을 고려 중입니다. 아내가 타인의 정자를 받아 낳은 자녀도 제 친생자로 추정되나요?

A 대법원은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 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상적으로 혼인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 사이에서 인공수정 자녀가 출생하는 경우 남편은 동의의 방법으로 자녀의 임신과 출산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것이 친생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남편이 인공수정에 동의하였다가 나중에 이

● 아내가 낳은 아이가 내 자녀가 아닌 경우

Q 문 7 | 저는 직장관계로 지방에서 근무하면서 한 달에 한두 번 집에 갔는데 최근 아내가 출산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아내의 행적에 의문점이 있어 자녀와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친자식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했는데 이제라도 등록부에서 뺄 수 있는지요?

A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아내가 낳은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44조 제1항 및 제2항). 여기서 친생추정은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녀가 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므1663 판결).

그러므로 귀하는 자녀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동법 제846조). 이러한 친생부인의 소는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동법 제847조 제1항).



● 아내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Q 문 8 | 저는 남편의 심한 폭력에 시달리다 가출하였고 3년 전부터 직장동료와 동거하여 작년에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남편이 아이의 아버지로 등록된다고 합니다. 아이의 생부를 아버지로 올릴 수는 없나요?

A 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44조 제1항). 귀하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했으므로 그 자녀는 남편의 친자로 추정을 받게 되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남편 또는 아내가 배우자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47조).

- 가정법률상담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2024) 중에서



Q 저는 북한에서 살다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 탈출하여 한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입니다. 북한에서 결혼을 하였으나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연락을 끊어 생사조차 알지 못합니다.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빠듯했기에 남편을 찾아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어렵게 살다가 먼저 탈북한 언니의 뒤를 따라 저 역시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남편과 연락이 두절된 지 15년도 넘었습니다. 언니는 좋은 사람이 있다며 만나 보라고 하고 저 역시 한국에서 다시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서류상 남편이 있어 그마저도 어렵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북한의 남편과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19조의2에서 북한에 배우자를 둔 북한이탈주민의 이혼 절차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으로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은 그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9조의2 제1항).

이를 위해 이혼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신청서(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 서식)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서류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통일부장관은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5 서식)를 발급하게 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6).

이러한 절차를 통해 배우자가 북한에 남아 있어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통일부장관의 서면을 받게 되면 귀하는 그 서면을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9조의2 제3항).

김진영 상담위원



파리의 친구 집에서 열흘쯤 머물면서 친구가 학교에 가면 미술관 나들이에 나서곤 했다. 루브르는 이틀, 오르세 미술관에서 하루, 피카소 미술관과 로댕 미술관 하루 그리고 퐁피두 센터에서 하루를 보냈다. 그래도 그냥 스케치하듯 다녀온 느낌이었다. 루브르 박물관은 전시물을 주체하지 못하는 느낌이었고, 내가 파리에 갈 때 우리나라 덕수궁 미술관에서 오르세 특별전이 있었기에 오르세에 가서 작품이 없으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것이었는지 오르세에 들어서자마자 알았다. 약간 멀미하는 느낌으로 미술관을 돌아다녔다. 너무 많은 감상에 주체하지 못하는 느낌이었을까. 그래도 ‘모나리자’는 특별했다. 교복을 입은 일본 고등학생 수학여행단이 가득 찬 홀에 살짝 여유가 있어 모나리자 바로 앞에 설 수 있었다. 생각보다 작은 그림, 명작이 넘쳐나는 루브르에서도 방탄유리 안에 모셔진 모나리자, ‘저게 모작이라는 설도 있다던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왜인지 눈물이 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그리고 오르세 미술관에서는 모네의 작품들보다 시슬리의 작은 풍경화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사람들에게 치이며 이런저런 외국어의 홍수와 소음 속에 밀려다니던 미술관 나들이를 생각해 보니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으로 10년을 보내며 때로 지극한 고요 속에서 인류의 위대한 걸작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던 이 사람의 시간이 부럽게 느껴졌다. 물론 그 사람이 미술관으로 걸어 들어가게 된 계기는 마음 아팠지만 말이다.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으로 10년을 보내 이 사람 패트릭 브링리의 특별한 회고를 담은 에세이다.

지은이는 대학 졸업 후 《뉴요커》에 입사한다. 그 후 4년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보이는 뉴욕 한복판에서 성공을 꿈꾸며 치열하게 일했는데, 어느 날 각별한 사이였던 형이 갑자기 암 투병을 시작했고 그의 결혼식이 열렸어야 했던 날, 형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그해 가을 그는 《뉴요커》를 그만두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으로 지원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한동안 고요하게 서 있고 싶었다.” 그는 그렇게 경비원이 되어 그곳에 있는 300만 점의 예술 작품을 지키게 된다. 2018년, 그는 10년간 근무했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떠나 뉴욕 도보 여행 가이드로 일하며 미술관에서 보낸 시간을 회고한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All the Beauty in the World)』를 썼다.

이 책에 대해 출판사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매우 적절하게 보인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으로 10년, 인류의 위대한 걸작들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한 남자의 삶과 죽음, 인생과 예술에 대한 우아하고 지적인 회고”

예를 들어 내가 처음 밑줄 그은 책의 한 대목은 이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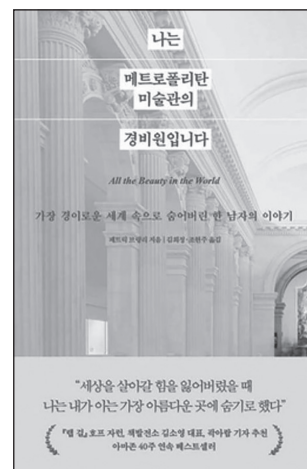
“그즈음 틈틈이 이집트 역사에 관한 책을 읽고 있던 나는 책으로 읽는 것과 예술품을 직접 보는 경험이 얼마나 다른지 다시 한번 느낀다. 책 속 정보는 이집트에 관한 지식을 진일보시켰지만, 그와는 대조적으로 이집트의 파편을 실제로 마주하는 것은 나를 멈추게 한다. 이것이 예술의 본질적인 특성이다. … 요점이야말로 예술이 절대 내놓지 않는 것이다.” - 4장 사치스러운 초연함 중에서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가장 경이로운
세계 속으로 숨어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

패트릭 브링리 지음
김희정 · 조현주 옮김

웅진지식하우스,
2024(초판16쇄)



이숙현 편집부장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습을 마치고

상담소는 법교육의 일환으로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에게 다양한 임상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동계방학 기간 중 본소에서 현장실습을 한 대학생들의 소감 중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요약하여 신는다.

이 정 무

동국대학교 법학과

가장 기억에 남는 업무는 전화상담연수입니다. 다양한 질문과 사례를 접할 수 있었고 그렇기에 더 긴장되는 업무였습니다. 가정폭력행위자 상담치료 경과보고서 초안편집, 가정폭력 판결문 및 보호처분 결정문 분류 작업, 가정폭력 수탁상담 통계 정리 등을 경험하며 가정폭력사건을 이해하는 시야가 넓어질 수 있었습니다. 상담참과 및 법률구조 관련 서류 작성 연수를 통해,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등의 소송관련 서류의 초안작성도 할 수 있었고, 내담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술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소통과 법률상담 실무를 함께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 이후 연신 감사 인사를 전하셨던 내담자분들을 통해 법률복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법적 해결방안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최 회 준

동국대학교 법학과

상담소의 현장실습을 시작한 이후로 개별 법률에 대한 단순 이해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으며 제도와 절차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와 인식의 필요성에 대해 재고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법률을 다루는 일은 사람의 일이며 가사사건들은 이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현장실습연수를 마무리하는 시점인 현재 현장실습연수 전과 비교하여 연수를 통해 법률구조관련 서류 작업(각종 소장과 재판관련 서류

작성등), 행정 사무 업무, 가사사건에 대한 법률적 지식 및 실무의 영역에서 크게 성장하였음을 체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업무활동 등이 워낙 방대하였기에 4주 간의 연수기간은 이를 모두 경험하기에는 짧았습니다. 이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박 서 인

동국대학교 법학과

한 달간 현장실습 연수를 하면서 확실히 실무를 통해서 배우는 게 참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간단한 업무여도 늘 집중해서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개인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서 법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 중요하지만,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느껴져서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더 많이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노 태 연

동국대학교 법학과

특히, 서울가정법원으로 출장을 갔을 때 거동이 불편하지만, 주변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내담자를 만났던 기억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내담자는 그동안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상담소를 통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도와 내담자와 얘기하면서 본인진술서를 작성하고, 청구원인추가신청서 및 소송구조 신청서의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법원에 내담자께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모두 도운 뒤에 내담자께서 저

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저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과 더불어 약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조 윤 이

동국대학교 법학과

가정법원 내 종합민원실에서의 법률상담 참관을 통해 일반인들이 법률문제로 인한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 듣고 공감할 수 있었고, 사람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사례들을 직접 보고 들으며 저의 역할과 책임을 통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법률구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싶다는 목표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또한 좋은 연수 동기생들과 만나 함께 공부하며 일할 수 있었으며 아침조회 시간, 피드백 시간 그 외에도 질문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신 선생님들께 많이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최 서 원

동국대학교 법학과

상담 참관도, 교육부 업무도, 도서관에서 판례를 정리하는 업무도, 선생님들의 일반 업무 보조도 모두 열심히 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업무는 아무래도 '전화상담연수'인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을 할지도 예측할 수 없고, 내가 설명을 잘 할 수 있을지, 내가 알고 있는 질문일지라도 내담자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늘 긴장하며 전화상담연수에 임했습니다. 또한 상담소에 상담전화를 하는 분들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 더욱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도 연수를 더해갈 수록 점차 업무에 적응하게 되고, 매 뉴얼을 만들고 익히며 두려움보다는 뿌듯함이 더 커졌습니다.

앞으로 상담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공정한 문제 해결을 통해 모두가 함께 행복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보장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4월 자원봉사자

• 야간상담을 해주신

강종협, 방선영, 이승주, 천정환, 황미옥 변호사님

• 전화 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김정혜, 문은전, 문은희, 박선화, 유문숙, 이병주 님

• 대학생 자원봉사

김시현, 남계목, 문세원, 이동희, 강태목, 류제빈, 손예린, 이준호, 김현우, 차서연, 김도윤, 나단비, 신영혜, 이채운, 정민주, 전성희, 최서연, 최성은, 한승현, 김나현, 이준영, 김미은, 김민재, 김연지, 문다은, 이지민, 한아름, 원서영, 이해원, 조희서, 하유지, 구가연, 임동현, 김유빈, 김지원, 여예령, 차진희, 최민제, 권순호, 김정은, 이지율, 정재경, 길가현, 전서영, 김용평, 노태연, 서동석, 이재영, 장다원, 고유진, 김정민, 김민서, 김소영, 문정현, 서현진, 김창열, 박진희 님

후원 고맙습니다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이현혜, 천정환, 최문원 님

● 회원이 되시려면 ●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17-0003-1418-1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02-780-5688 재무회계과



2024년도 제1차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직원재교육 겸해

본소의 2024년도 제1차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위원장 김상용)가 지난 4월 26일 본소 8층 대강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직원재교육을 겸해 이루어진 이날 회의에는 광배희 소장을 비롯해 본소 직원들과 본소의 가족법개정자문위원인 김상용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가사·상속전문센터장), 차선자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상용 교수의 ‘자녀의 인도청구에 있어서 직접강제의 허용 여부에 대한 소고’, 박인환 교수의 ‘성년후견 패러다임의 전환과 능력에 관한 민법규정의 개정과제(연구노트)’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질의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관련사진 2번)

2024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국업무협력기관 워크숍

지난 4월 5일 본소 강당에서 2024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국업무협력기관 워크숍이 있었다. 이날 워크숍은 전국협력기관 임직원들과 본부 광배희 소장 및 상담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본소는 2019년 12월 31일자로 지부사업을 종료하게 되었고 이후 前 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소송구조 연계 등 종전 사업의 대부분을 합리적으로 수행하는데 뜻을 같이한 바 있었다. 이날 본소와 전국업무협력기관은 지금까지처럼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각 지역사회의 저소득, 취약계층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행사 1부는 광배희 소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의 사회로 전국업무협력기관 소개 및 인사, 전국업무협력기관 소송구조 사업 등 안내(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 복미영 상담위원)와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2부에서는 참석자들이 본소에서 주관한 제61회 법의 날 기념 가족법 개정 캠페인에 참여하였다.

2024년 전국업무협력기관 참석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전국업무협력기관 소장·이사장 외 직함 및 존칭생략, 지역 가나다순임).

구리·남양주 - 구리가정·성통합상담지원센터 전병화 센터장, 김남희 / 군산 - 군산가정상담센터 조미영 센터장, 신명애 / 동해 - 사단법인 바로 김서정 / 부천 - (사) 경기가정상담소 부천지부 황영숙 소장, 지은정 / 성남 - (사) 경기가정상담소 정진경 / 송도 - 인천우리가정폭력·성폭력상

답소 이영미 소장, 주아미, 김미연, 이은미 / 수원 - (사)정기가정상담소 남부지부 수원가정상담소 허정미 / 순천 - 순천여성상담센터 채미진 / 울산 - (사)울산 성·가족상담소 정민자 소장, 조해린, 백주희 / 익산 - (사)익산가정상담센터 김성란 센터장, 강유진 / 인천 - 인천가정상담센터 한현애, 김성숙, 박지훈 / 정읍 - 정읍가정상담센터 송경숙 센터장, 이현숙 / 중구 - 양실가정상담센터 제오복 센터장, 양영재 / 제천 - 제천가정상담센터 임지연 / 창원·마산 - 창원가정·성폭력통합상담센터 서정희 센터장 / 청주 - (사)청주가정폭력상담소 정복자 소장, 이자영, 유혜정 / 평택·안성 - 평택가정상담센터 석현숙 센터장 (관련사진 2면)

제61회 법의 날 기념

‘법률구조제도(무료법률상담에서 소송구조까지)

홍보 및 가족법개정서명운동’ 진행

본소는 4월 5일 본소 회관 앞에서 제61회 법의 날 기념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구조제도 홍보 및 가족법개정서명운동’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여의도 벚꽃 축제에 참석한 서울 시민들에게 가족법 상식, 법률구조 안내 브로슈어 등을 배부하면서 상담소의 법률구조사업에 대해 안내하고 부부재산제 개정,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상향 조정, 양육비 선급제도 도입, 비혼모의 부양청구권 인정, 친생추정조항 개정, 부성원칙조항 개정 등의 가족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함께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는 상담소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하였으며, 전국업무협력기관 임직원을 비롯하여 시민 252명이 가족법개정서명운동에 동참하였다.

본소, 가정폭력예방지침서 I

「꽃으로도 풀잎으로도 때리지마라」

수정 보완하여 재발간

본소에서는 가정폭력예방지침서 I 「꽃으로도 풀잎으로도

때리지마라」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새롭게 발간하였다. 본 지침서는 2003년에 처음 발간되었으며 이번에 스물아홉 번째로, 처음 발간 이후 개정된 법의 내용 및 통계자료의 내용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왔다. 재발간된 책자는 내담자 및 행위자에게 교육자료로 배포하고, 업무협력기관 등 전국 유관기관에 향후 필요시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진행 중이다.

- 4.17 일자리지원센터 연계 신용회복 상담
- 전규선 상담위원

- 4.26.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상담원가족법 교육
- 조은경 상담위원

●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전규선, 천다라, 박효원, 고현희, 김지은 상담위원
김민선, 박슬기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4월 17일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사건 조정을 하였다. 25일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4월 8일 서울가정법원의 제8회 가정보호협의회 정기회의에 차연실 상담위원과 함께 참석하여 법원 안건을 토의하고, 본 상담소 가정폭력행위자 수탁 상담 현황 및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였다. 15일과 16일에는 서울경찰청의 '24년 상반기 여청수사 실무과정 워크숍에서 "가정폭력 관련 법령 및 경찰 대응방안"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18일에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등 사건을 조정하였고, 19일에는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의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무엇이 문제인가" 학술세미나에 참석하였다(비대면). 25일에는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였다.

곽배희 소장,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 참석

본소 곽배희 소장은 지난 4월 25일 대검찰청 별관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였으며, 기념식 전에 열린 귀빈 대상 식전 환담에 참석하여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박성제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등과 환담을 나누었다.

2024년 4월 상담통계

총 건수 4,358

법률상담 (3,703)

면접	전화	인터넷	서신
1,022	2,568	110	3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508	59	88

• 인터넷 정보 이용 90,118 건

2024년 4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4,358건이었다. 상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3,703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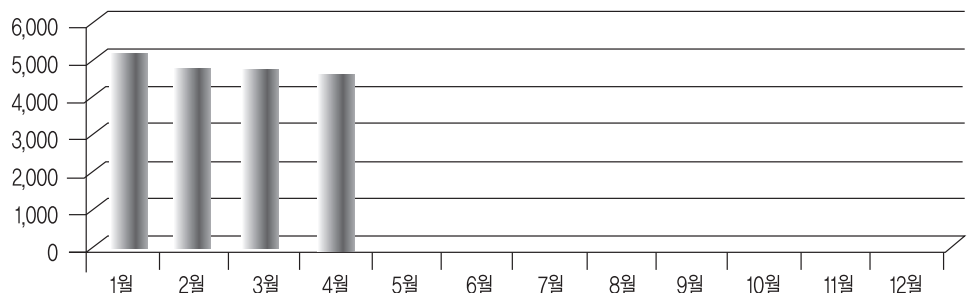
(85.0%), 화해조정 508건(11.6%), 소장 등 서류작성 59건(1.4%), 소송구조 88건(2.0%)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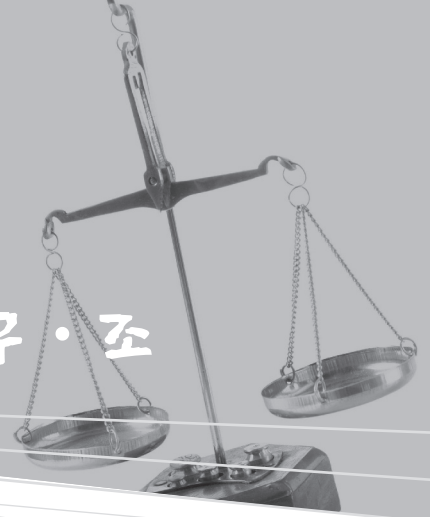
법률상담 3,703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24년 3월에 비해 남녀관계(0.2%→0.5%), 부부갈등(2.5%→2.6%), 친생부인(0.8%→0.9%), 파혼(0.2%→0.3%), 혼인무효·취소(0.5%→0.6%), 부양(0.7%→0.8%), 유언·상속(7.6%→8.3%), 가족관계등록부(2.3%→2.7%), 개명(1.1%→1.4%), 성변경(1.0%→1.1%), 파양(0.1%→0.2%), 미성

년후견(0.9%→1.1%), 성년후견(2.9%→3.2%), 임대차(0.1%→0.2%), 파산(2.9%→3.1%), 민사절차(0.1%→0.2%), 민사기타(0.7%→0.8%), 성폭력(0.0%→0.1%), 형사절차(0.3%→0.5%), 형사기타(0.6%→0.7%)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3,703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022건(27.6%), 전화상담 2,568건(69.3%), 인터넷상담 110건(3.0%), 서신상담 3건(0.1%)이었다.

**2024년
월별
총건수**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사업실패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3-1-82

담당 : 김상균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60대)은 전업주부로 생활하였으며, 배우자는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1999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운영하였는데, 임원이었던 부사장이 중국으로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바람에 경영난에 시달리게 되었다. 결국 계속된 적자로 인해 폐업하였으며, 2017년경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생각처럼 운영이 잘되지 않았고, 사업자금이 부족해 신청인 명의로 신용대출과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게 되었다. 이후 사업이 호전되어 재기에 성공할 줄 알았지만 뜻하지 않았던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다시 경영난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에 사업자금과 생활비가 부족해진 신청인 부부는 대출을 더 받게 되었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됨에 따라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어 이른바 ‘채무돌려막기’까지 하게 되었다. 그렇게 가까스로 유지 중이던 사업은 폐업에 이르렀고, 현재는 신청인이 일용근로를 하며 발생하는 소득 월 50만 원과 노령기초연금 월 48만 원으로 2인 가구가 생활하고 있다. 이처럼 사업 실패로 과도한 채무가 발생한 신청인은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4. 4. 25.)

채무자를 면책한다.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거액의
채무를 계속하여 발생시킨 무책임한 남편과의 이혼

법률구조 2023-1-207

담당 : 이새나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60대)와 피고(남, 60대)는 1982년 혼인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성년자녀 2명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형제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을 하였는데 월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활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온갖 허드렛일을 하며 번 돈으로 생활비를 마련하여 두 자녀를 양육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형제들에게 원고 몰래 수천만 원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으며, 원고와 자녀들이 살고 있는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수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2022년 피고는 집을 담보로 하여 대부업체에서 추가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의 총액이 집의 시세를 초과하게 되었다. 매월 지출하는 대출금 이자가 피고 월급의 두 배 가량 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점점 늘어나는 채무액을 해결할 생각 없이 차를 산 지 5년도 안 되어 새 차로 바꾸기도 하고, 주말이면 동창들을 만나 돈을 쓰고 다녔다. 원고는 40년이 넘는 혼인생활 내내 피고에게 생활비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힘겹게 경제활동을 하면서 두 자녀를 양육하였다. 그런데 두 자녀가 장성한 현재도 원고가 알지 못하는 채무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원고 몰래 원고의 형제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피고의 경제적인 무능력과 무책임한 태도로 인하여 원고는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불안한 생활을 해오고 있다. 혼인생

활 중 취득한 유일한 재산인 집마저도 피고의 대출금의 담보가 되어 버린 상황에서도 피고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바,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2024. 1. 25.)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가 원고의 큰 오빠와 큰 올케에게 차용한 19,000,000원과 작은 오빠에게 차용한 10,000,000원 그리고 막내 오빠에게 차용한 5,000,000원은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인 2033. 12. 29.까지 분할 상환하기로 한다.
3. 원고와 둘째 아들의 거주지(군포시 고산로 이하생략)는 피고가 매매를 하고 난 뒤 매매대금 및 근저당권을 해결하고 잔금 날짜를 원고에게 통보하여 주면 퇴거하기로 한다.
4. 모든 재산상황 즉, 소극재산을 포함한 연금 및 보험 등 각자 재산과 대출상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고 추후 모든 소송은 하지 않기로 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잘못 등재된
상간남의 자녀를 친생부인의 소로 바로잡음**

법률구조 2023-1-355

담당 : 김학모 변호사

사건명 : 친생부인

내용 : 원고(남, 20대)와 피고(여, 20대)는 2018년 혼인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소외 미성년자녀가 있다. 피고는 혼인기간 중 잦은 외출, 외박을 일삼더니 2021년경 가출하였다. 피고는 단 한 차례도 자녀를 만나러 오거나 원고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가 가정으로 돌아올 뜻이 없다고 판단하고 재판상 이혼을 하고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하였다. 이때 두 사람의 자녀 외에 사건본인이 원고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가 가출한 이후 피고를 만난 적도 없는데 사건본인이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놀라 확인한 결과 피고가 가출 후 상간남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잘못된 친생자관계를 바로잡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2024. 3. 15.)

1. 사건본인은 원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사정변경으로 협의이혼 시 정한 양육비를 증액함

법률구조 2024-1-5

담당 : 손수정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증액

내용 : 청구인(남, 40대)과 상대방(여, 40대)은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남, 10대)을 두었으나 2020년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과 함께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하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200,000원을 매월 10일에 지급한다는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이혼 당시 상대방은 유치원교사로서 급여가 많지 않았고, 청구인은 상대방이 사건본인의 친모이기 때문에 사건본인이 성장하면 양육비를 증액해 지급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양육비 월 20만 원 지급에 합의하였다. 하지만 사건본인이 중학교 입학 앞둔 시점에서 협의한 양육비는 사건본인 양육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상대방은 현재 식당을 운영하는 등 소득이 이전보다 많이 상승한 것으로 보여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4. 4. 9.)

1.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0호협****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의 2020. 12. 31.자 양육비부담조서 중 2024. 4. 이후의 사건본인에 관한 양육비 부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청구인에게 2024년 4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일까지 월 35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하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 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넷째 월요일 오후 2시 ~ 4시 (5월 27일, 6월 24일, 7월 22일)
- ▶ 강사 : 김명순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

가족·부부상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 ▶ 일시 : 2024년 2월, 5월, 8월, 11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 ~ 5시 (총 4회)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 강사 : 김병후 원장(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 강의방법 및 장소 : 대면강의, 본소 8층 A 강의실
- ▶ 일정 및 강의주제

일정	강 의 제 목
5월 30일	마음이란?
8월 22일	과학으로 본 분노
11월 21일	부부대화법

생활법률강좌

- ▶ 일시 :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 관련 법률·가정폭력 관련 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 전문성을 향상 시키는 출장 법 교육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초·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 관련 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비혼모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우리 가족 행복캠프」
비혼모 가정이 처한 법률적·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혼모 가정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자녀동반 캠프

- ▶ 일시 : 2024년 8월 중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 후원 :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함께 합니다.

등지고실 : 무료공개강좌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돕는 교육강좌

- ▶ 일 시 :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3시 ~ 5시
- ▶ 대 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 진 행 : 이서원 대표(한국감정케어센터)
황순찬 초빙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일정 및 강의제목

일 정	강 의 제 목	강사
5월 8일	결절이 화와 묵은지 화 : 火解하기② (+뿌리치료)	이서원 대표 (한국감정케어센터)
6월 12일	널 화라면 멋지게 내자 : 火解하기③ (+표현치료)	
7월 10일	삶에 대한 불만족과 관계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성격 특성 (+변증법적 행동치료)	황순찬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사회복지 학과)
8월 7일	상처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트라우마 (+이야기 치료)	
9월 11일	무력감과 방향 상실을 초래하는 우울 (+인지행동치료)	
10월 16일	반복된 부정적 경험이 만들어 낸 불안 (+수용전념치료)	
11월 6일	생각과 감정, 그리고 지각의 비틀림을 가져오는 갈망 (+동기강화상담)	
12월 11일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자기표현, 자살 (+자기발견적 치료)	

교사들을 위한 법 교육 - 교원직무연수

가족법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전국 초·중·고 교원의 전문능력 함양을 돕는 연수 프로그램

- ▶ 연수과정명 : 법과 생활
- ▶ 과정구분 : 전문성향상 과정
- ▶ 연수기간 : 2025년 1월 14일(화) ~ 16일(목), 1일 5시간, 3일간
- ▶ 이수시간 : 15시간(1학점, 성적산출 안함)
- ▶ 연수대상 : 서울·전국 초·중·고 교원 20명(선착순 모집)
- ▶ 연수운영 방법 구분 : (zoom을 이용한) 실시간 양방향 원격연수
- ▶ 연수경비(1인당 자비 부담액) : 무료
- ▶ 교과과정
 - 가족법 : 가족법 변천사 및 법률구조사 / 혼인 관련 법률 / 이혼 관련 법률 / 부모·자녀 관련 법률 / 후견 관련 법률 / 상속·유언·유류분 관련 법률
 -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률
 - 아동복지법 관련 법률
 - 가정폭력 관련 법률
 - 폭력예방교육의 이론과 실제
 - 주택 임대차 관련 생활법률
 -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 관련 법률

※ 교육일정 및 강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 행복캠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상담 그리고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자녀동반 캠프



일시 ▶
2024년 8월 중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1.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가정폭력 등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게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상담

2. 「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이란 주제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용방법, 영구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국민임대 등 임대주택의 유형별 청약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등 주거복지 자원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과 관련한 강의 및 상담

3. 동반 자녀들을 위한 「놀이치료」

4. 온가족이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및 가족소통 체험활동」

▶ 후원 : 삼성생명 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함께 합니다.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상담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상상담

상담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화상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상담소 홈페이지에서
예약신청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간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9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
전화상담 및 문의 1644-7077

다문화가정을 위한 야간 영어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9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사전 예약 필수)
사전예약 및 문의 1644-7077

www.lawhome.or.kr